

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5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8평창올림픽의 Host City로서 범군민적 참여열기 확산과 문화시민의 식 고취의 구심점 역할을 할 「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」의 활동에 필요한 행·재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」의 지원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다른 법령과의 관계(안 제2조)
-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(안 제3조)
-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(안 제4조)
- 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등(안 제5조)
- 재정지원 등과 관련 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 규정 준용(안 제6조)
- 조례의 효력은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로 함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2. 5. 1 ~ 5. 20, 제출의견 없음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"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"의 설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)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,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재정지원) 평창군수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, 문화시민의식 고취 등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행정지원 등) 평창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(안 제3조)

2. 미첨부 사유

-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「2018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」의 행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활동계획 등이 미확정인 만큼 재정소요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

【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】

제5조(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)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3.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
연락처	(033) 330 - 2018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

제6조(국가 등의 지원)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